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81 호 2021. 3. 11.(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34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44호[하천 점용 협의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46호[중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47호[어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284호[「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285호[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07호[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후보자 접수 공고]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17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18호[울산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2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19호[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30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 - 3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명촌천, 연암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원에스** 대표이사 **식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로 **-13(*촌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송전선로 매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효문동 820번지

나. 면적

- 당초: 30m²(영구)

- 변경: 29.5m²(영구)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2020. 10. 14. ~ 2024.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 - 44호

하천 점용 협의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안전정보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하천 수위감시계 및 지지대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중산동 1166-1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 영구 4m²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영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46호

중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주)유앤씨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중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지적재조사지구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117번지 일원
 - 나. 면 적 : 102,032m²
4. 지적측량 수행자가 대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등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47호

어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어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주)한국도시측량공사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어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지적재조사지구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25번지 일원
 - 나. 면 적 : 43,368㎡
4. 지적측량 수행자가 대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등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 284호

「울산광역시 복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복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 다. 지원 사업(안 제4조)
- 라. 지원신청(안 제5조)
- 마. 지원취소 등(안 제6조)
- 바. 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사. 준용(안 제8조)

3. 관계 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4. 입법문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3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4층)
(전화:052-241-7781, 팩스: 052-241-7769, E-mail : lyh9877@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 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복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위생 관련 단체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생업소나 위생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 및 음식, 위생용품 등 관련 대회·축제·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입식좌석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 사업
5.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8.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취소 등)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한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생업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 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핸드폰):
업소 (단체)현황	업 소 명			업 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건물소유 형 태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구 분	<input type="checkbox"/> 모범업소 <input type="checkbox"/> 좋은식단실천업소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우수업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내 용	<input type="checkbox"/> 시설개선사업 <input type="checkbox"/> 음식개발 보급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소요경비	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소(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1. 사업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 가. 규모 :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

-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례안명 :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2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5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1. 3. 11. ~ 2021. 3. 21.(11일간)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자격요건
 -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 나.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5. 주요기능 : 심의
 - 가. 기금의 운용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
7. 제출서류 : 「붙임1」 신청서 1부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위생과
 - 나. 이메일 : khk7675@korea.kr
9. 선정결과 : 2021. 4. 16.(금)한 선정자 개별통지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	------------

울산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 . .
주 소*					
직 장*	직장명(직업):		직위:		
연 락 처*	☎ 휴대전화:		직장 :		
E-mail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				
주 요 경 력					
비 고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 시까지

*필수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 위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07호

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후보자 접수 공고

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후보자를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접수부문·인원 : 2개 부문, 2명

시상부문	시 상 범 위	시상인원
효행·봉사·교육·환경	경로효친, 자원봉사, 교육, 환경정비, 환경개선 등	1명
산업·경제·문화·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수출산업육성, 공연, 축제 및 조형예술, 문학, 언론출판, 체육진흥 등	1명

※ 단,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함.

2.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3. 15.(월) ~ 5. 14.(금)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2021. 5. 14. 이전의 우체국 소인 날인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 052-241-726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1층 주민소통담당관)

3. 대상 후보자 자격

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면서
각 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자

나. 추천제외 : 2021년도 구청장 포상업무지침에 의함.

4. 대상 후보자 추천

가. 추천권자

- 구청장, 동장, 각급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
- 만 20세 이상의 북구민(단,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

나. 구비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각 1부 및 사진 1매
- 공적 증빙자료(관련 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 및 동에 비치, 구 홈페이지 게시

5. 공적심사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6. 시상시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 향후 수상일정 변경 될 수 있음

7. 특 전

가. 명예의 전당 헌액

나. 구 주관 각종행사 초청 : 쇠부리축제 등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등

8. 기 타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052-241-7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317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및 이용 방법(안 제1조, 제2조)
- 나.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안 제3조, 제4조, 별표)
- 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의무 및 이용자의 의무(안 제5조, 제6조)
- 라. 위탁 신청 및 협약 관련 규정(안 제7조~제9조)
- 마. 수탁자의 책임 및 업무 관련 규정(안 제10조~제14조)
- 바. 운영 관련 지도 감독(안 제15조)
- 사. 위탁의 해지(안 제16조)

3.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제17조의6

4. 제정규칙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보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 전화번호: 052-241-8249, 팩스번호: 052-241-8245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 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①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약 시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일수는 최대 3주(20박21일)로 한다.

제3조(이용료의 징수) ①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조례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제5조(공공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의무)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수유 및 건강상태를 매일 일정시간을 정하여 산모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매일 산모 및 신생아 기록지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종사자는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① 산모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산모는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병원검진 또는 치료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산모가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협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세부시설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대상 및 범위
3.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
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5. 위탁대상이 되는 시설 및 장비 목록
6. 수탁자의 의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책임 등) ① 수탁기관의 대표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며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의 기본방향
2. 수탁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실적
4. 각종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2.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3조(수지 정산보고)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분석 및 운영실적을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해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지사유 등을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제4조 관련)

구분	반환기준	반환금액	
입소 전	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용예정일 9일 이전	예약금 전액 미환급
		이용예정일 10일~20일 이전	예약금의 30% 환급
		이용예정일 21일~30일 이전	예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예약금 전액 환급	
입소 후	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예약일		분만예정일	
본인 연락처		배우자 연락처	
감면사유			
<p>「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3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300px;">신 청 인 : (인)</p> <p style="margin-top: 20px;">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첨 부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 구비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신청서

신청인			연락처		
소재지					
대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탁기간	. . .부터까지				
<p>「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월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첨 부 서 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수료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연장신청서

신청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탁기간	. . . 부터 . . . 까지		
<p>「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수료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없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318호

울산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일원에 울산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지구(사업)개요

- 명 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울산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일원
- 면 적 : 74,167m²

나. 도시관리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수변공원, 하수도

다. 지구지정 제안자(사업시행자)/주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마.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12)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052-241-8377)

바.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사.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기 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51-604-5973, 5955),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319호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일원에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지구(사업)개요

- 명 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일원
- 면 적 : 209,132㎡

나. 도시관리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다. 지구지정 제안자(사업시행자)/주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마.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12)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052-241-8315)

바.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사.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기 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51-604-5973, 5955),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